# 「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03 04(수) 평창군수(농축산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04. 14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04. 20(월) 제20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농축산과장 이상필)

- 가. 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식품안전 기본법」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조.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,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에 기여하고,
- 나.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·가공을 하는 경우 특정 시기(수확기, 농한기 등)에 작업이 집중되며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표준조례를 마련함

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○ 본 조례안은 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지원·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조례의 적용대상 농업인의 지정과 식품가공산업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,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"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" 설치 등을 규정하여,
-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  - 【붙임】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
#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지원·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,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인 등"이란 평창군(이하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.
- 2. "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(이하"식품가공산업"이라 한다)"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가. 농업인 등이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
  - 나.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(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)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
  - 다. 식품가공산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
- 3. "사업자"란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·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 또는 판매(이하"생산·판매등"이라 한다)를 식품가공산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.
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장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·인력·정보·기술·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을 하고, 해당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 산업의 시설(이하"시설"이라 한다) 기준 설정과, 그 가공식품(이하"식품"이 라 한다)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업자의 의무)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·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,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교육·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식품가공산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의 사업자는 제8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촉진을 위한 기본
  -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식품가공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- 2.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방안
- 3.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, 품질관리 및 조사
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.
- 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"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(이하" 지원센터"라 한다)"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센터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각종 정보, 교육·훈련 및 연수,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  - 2.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
  - 3.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·세무·회계·디자인·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
  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 -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  -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는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7조(사업자의 지원)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군 또는 그 직속기관·사업소 및 읍·면에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 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제8조(시설기준 및 점검)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[별표 1]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기준의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의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・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자주적인 위생관리 등) ①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·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및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.
  -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정보제공 등 촉진)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·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 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심의위원회 설치)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심의 ·조정하기 위하여 "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를 둔다.
  -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"평창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(농업정책분과)"가 대신한다.
- 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  - 1. 식품가공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  - 2. 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
  - 3. 식품품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식품가공산업에 필요한 사항 등
- 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,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14조(준용) 사업자의 지원,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사 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등에 따른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1]

#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기준 설정

-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
  - 가.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(이 하"건물"이라 한다)
    - 1)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·화학물질,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부터 차단되어야 한다.
    - 2)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나. 작업장

- 1)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·화학물질,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·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 설과 분리되어야 한다. 다만,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 (농산물 등)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식품제조시설이 오 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- 2) 작업장은 원료처리실·제조가공실·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·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,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, 구획(칸막이·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구분 (선·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와 같다) 하도록 한다.
- 3) 작업장의 바닥・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.
  - 가)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여,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나)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.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.
  - 다)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, 벽, 바닥, 천장, 출입문, 창문 등은 내구성,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, 세척·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.
  - 라) 가), 나), 다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.

- 4)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·유해가스·매연·증기 등을 환기시키 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- 5)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, 설치류,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6)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(처리시설)으로만 유입되어야 한다.

#### 다. 식품취급시설 등

- 1) 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·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·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2) 냉동·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 라. 급수시설

- 1) 수돗물이나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2) 1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 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.

# 마. 화장실

1)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 바. 창고 등의 시설

1)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·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.

# ○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개별기준

-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적용함

<사례 : 장류제조업의 경우>

### - 메주제조

▶ 제조공정 : 원료-선별-세척-침지-삶기-분쇄-성형-건조-발효-숙성

▶ 필요한 시설

· 작업장 : 세척 및 삶기, 성형이 가능한 기구·설비 및 상하수도 연결

· 발효실 :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(건조기로 대체 가능)

## - 제품제조

▶ 된장 제조공정 : 메주-세척-담기-간장분리-숙성-포장

▶ 고추장 제조공정 : 원료-분쇄-당화-교반-숙성-포장

▶ 필요한 시설

· 작업장 : 세척 및 삶기, 성형이 가능한 기구·설비 및 상하수도 연결

· 포장실 :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

· 분쇄실 :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

ㆍ 기계류 : 재료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

# - 사과즙제조업의 경우

▶ 제조공정 : 원료-선별-세척-분쇄-가열-착즙-포장

▶ 필요한 시설

· 작업장 :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시설

· 분쇄 및 포장실 :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